

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

- 보험계약자(Policy Holder): 큰사랑재가요양센터(소급담보일2019.07.01) (121-80-17232)
- 증권번호(Policy Number): F2022-0389032
- 급여종류: 방문요양&방문목욕&노인돌보미&장애인돌보미
- 전문인: 60명
- 보험기간(Policy Period): 2023-03-07 24:00부터 2024-03-07 24:00까지
- 보상한도액(Limit of Liability):
- >>방문요양/방문목욕

구분	1인당	1사고당	총보상한도액	자기부담금
대인배상		50,000,000	무한	100,000
대물배상		5,000,000	10,000,000	100,000

>>돌보미(노인돌보미/장애인돌보미/돌보미SOS)

구분	1인당	1사고당	총보상한도액	자기부담금
대인배상		150,000,000	무한	0
대물배상		5,000,000	100,000,000	0

- 보험료(Flat Premium): 1,185,900(원)
- 보험조건(Terms & Conditions):
- 1) 전문인배상책임보험(전문인배상)
- 2) 최초 통보인원에 대한 확정보험료
- 3) 추가 인원으로 발생하는 Additional Premium은 익년 갱신시 반영
- ※ 계약방식 : 가입시점의 종사자수 통지, 종사자 교체사실 통보 불필요, 연 1회납입으로 종결
(가입 후 추가되는 전문인에 대해 고지가 없는 상품이며 자동으로 보장이 적용되는 상품임)
- ※ 보험가입 시점의 종사자 (요양보호사, 활동보조인, 노인돌보미) 인원수에 따라 보험료 확정
- 장기요양 - 바우처 통합가입 : 특정 종사자가 방문요양/목욕서비스와 노인돌봄종합서비스
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겸업하더라도 추가 보험료 납입이 없음
- 본 가입증명서는 상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며,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
현대해상이 약정한 보험계약에 준함을 확인합니다.

2023년 02월 24일
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

대표이사 조용일 . 이성재



계약담당

Tel.1544-8901 Fax.0505-505-4102

※ 사고발생시 모든 보상은 해당 보험계약의 가입조건과 약관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.

H 현대해상화재보험